

공무(직무)상 요양자 진료비 청구요령 안내

의료보험관리공단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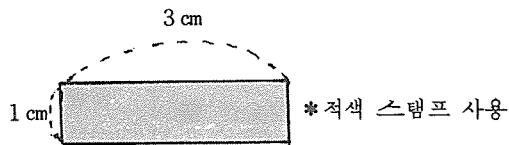
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(직) 수행중 사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(직무)상 요양급여 승인을 얻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경우 진료증에 승인된 경우와 진료후에 승인된 경우를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진료증에 승인의 경우

- 진료 종료전에 “공무상(직무상) 요양승인결정서”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전액 징수치 아니하고 진료비 총액을 공단에 청구 하여야 하며,

- 공상승인 상병과 전혀 별개 상병만의 치료를 위한 진료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85-11호 “진료수가 기준”에 의거 의료보험으로 급여를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수진자로부터 징수하고 별도로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공무상 요양급여 진료비명세서 뒤에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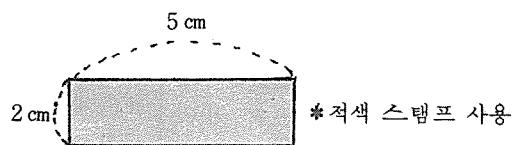
- 공무상진료비 명세서상의 수진자 성명란에 빠짐없이 아래와 같이 “공상”표기를 하고 반드시 동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



- 진료비 청구시는 일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와 구분 철하여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청구하여야 합니다.

- 또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기간을 초과하여 동일 상병에 대하여 진료하였거나 초과 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공상 요양자에게 연장승인 신청도록 권장하고, 초과 진료한 사항은 진료비 명세서 수진자 성명란에 “공상 연장 신청중”이라고 주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

- 공무상 요양 진료가 승인 기간내 종결 완치된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상단 우측 여백에 실제 진료 종결일자(의래포함)를 아래와같은 고무인을 날인, 공무상 요양 완료를 표시하고 이 경우도 반드시 동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

○ 진료후에 승인의 경우

- 진료 종료전에 “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”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의료보험 수진자와 동일하게 징수하고 공단 부담금만 청구하여야 하며,

- 수진자로부터 공무상 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요청이 있을때에는 진료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